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49
----------	------

2020년 6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5일 봉양순 의원 (찬성15명)
2.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3. 상정일자 :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6월 1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요지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증진 및 미래복지서비스 창출을 위해 서울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복지재단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시민의 법률 및 금융 복지 서비스를 지원함.

- 서울시 저소득·취약계층의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을 위해 제안함.

2. 주요내용

- 가. 저소득·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공익 향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조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8호)
- 나.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조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9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및 현황

-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재단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단이 사업추진에 있어 전문성과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2013년 “서울금융복지센터”, 2014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개소해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었으며, 2015년 조례개정을 통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옴.

가. 저소득·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공익향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안 제4조 제8항 신설)

- 「법률구조법」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인 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음.

- 법률구조가 법률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법률복지는 보편적인 서비스 이용 가능성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¹⁾
-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복지관련 법률상담·자문 및 공익소송 등 법률서비스 원스톱 제공, 법·제도 개선, 법률교육 추진, 네트워크 구축 등 시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 20년도 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센터 사업 추진 개요

- 조직 : 총 6명
- 기간 : 2020. 1 ~ 12월
- 사무실 : 서울시복지재단 내 8층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8층)
- 예산 : 161백만원
- 대상 : 저소득 서울시민, 복지종사자 등 법률서비스 필요 시민
- 방법 : 복지법률상담콜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 내용 : 공익소송, 복지법률 상담 및 자문, 교육, 제도개선 추진 등

1) 정해식 외 (2017), 법률구조 실태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방안, 법무부

- ' 19년 공익법센터에서는 소송 61건²⁾, 법률상담 2,124건을 수행했으며 그 외에도 1,340명을 대상으로 법률교육 등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나.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안 제4조제9항)

-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2019 한국복지패널³⁾ 기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총부채 평균은 5,283만원인데 비해 저소득 가구는 평균적으로 1,263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부채의 용도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에서 약 47%의 부채가 주택 관련 자금으로 가장 큰 용도를 차지하는 데 비해, 저소득 가구에서는 약 34%가 생활비(생계비)가 부채의 가장 큰 용도인 것으로 드러나, 단순히 부채의 비용을 비교하는 것보다 부채의 용도 등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⁴⁾
- 근로빈곤층이 저축과 소비를 선택하는 것은 열악한 취업 상태와 가구 여건에 따른 측면이 강하고, 이들이 가계부채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상당수는 비합리적 선택이라기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의미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의미함.⁵⁾

2) 소송 내용은 무연고자의 상속재산처리를 위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 등임.

3) 원표본 가구는 7,072가구로 표본의 배분은 복지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층 3,500가구, 중위소득 60%이상에 해당하는 일반가구 3,500가구로 추출되었음.

4) 여유진 외(2019),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노대명(2018),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실태와 향후대응방안, 보건복지 ISSUE&FOCUS 35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한 가계부채 문제는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기보다 외부환경을 개선하고 추가적 부채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음.⁶⁾
-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에서는 2016년 3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채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 생계자금, 주거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 햇살론(저금리 대출지원), 자활·일자리 연계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악성 가계부채 확대 예방, 가계부채 규모 관리, 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을 통해 빚으로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음.

※ 20년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사업 추진 개요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20. 1 ~ 12월 • 대상 : 저소득·금융취약계층 등 서울시민 모두 •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성부채 확대예방 : 재무상담, 금융교육 |
|---|

6) 노대명(2018),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실태와 향후대응방안, 보건복지 ISSUE&FOCUS 35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가계부채 규모관리 : 채무조정 지원·연계
-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 주거·일자리 등 서비스 연계
- 추진방법
 - 15개 중앙 및 지역센터 (각 상담관 2명) 운영
 - 채무상담,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교육을 통한 예방사업 추진
 - 지역센터별 전문상담관이 상담을 통한 빚 문제 해결, 동행서비스 제공 등

- 2019년도에는 총 23,641건의 금융복지상담을 실시하고, 1,095건의 개인 파산, 46건의 개인 희생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4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복지재단의 공익법센터와 금융복지센터 사업의 수행근거를 명확히 구분해 명시함으로써, 향후 복지재단이 해당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 또한 집행부에서도 본 개정안에 대해 복지재단의 업무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으로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입법취지와 목적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적 정비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양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49
----------	------

발의년월일 : 2020년 05월 25일
발 의 자 : 봉양순 의원 (1명)
찬 성 자 : 이병도, 김화숙, 이정인,
김동식, 김상훈, 박순규,
이승미, 김기덕, 김용연,
오현정, 김소양, 이준형,
이영실, 서윤기, 김혜련 의원
(15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증진 및 미래복지서비스 창출을 위해 서울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복지재단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시민의 법률 및 금융 복지 서비스를 지원함.
- 서울시 저소득·취약계층의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을 위해 제안함.

2. 주요내용

- 가. 저소득·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공익 향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조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8호)
- 나.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조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9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저소득·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공익 향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9.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7. (생 략)</p> <p>8. <u>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u></p> <p><신 설></p> <p>9. ~ 11. (생 략)</p>	<p>제4조(재단의 사업)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저소득·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공익 향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u></p> <p>9. <u>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u></p> <p>10. ~ 12.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p>